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O B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305호

의 안 명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대상기관 금융감독원

의 결 일 2022. 4. 11.

주 문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4월 11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김기표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욱

위원 박상희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위원 최정묵

위원 송현주

[별지]

국민의 삶을 위한 최우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전자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유럽상공회의소(ECCK) 건의사항 -

2022. 3.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개선방안 3

III.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4

I. 추진배경

◇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가 우리나라의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마약 운전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인정’ 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오며 따라,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방안을 검토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며,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임의보험에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주한 외국상외와의 정례적 정책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고충을 청취하는 등 주한 외국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 특히, 지난해에는 ‘주한 외국기업 음부즈만*’을 공식 출범(21.3월) 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 처리, 민원 상담, 제도개선 요구 등 창구 역할 수행

* 주한 외국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 부패·불공정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이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전용창구 운영 중

□ 이번에 ECCK가 요청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사항은 국내 보험회사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 및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현재 운전자보험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을 중하게 보아 보험금 지급이 제한

○ 반면, 음주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마약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보장(보험금 지급)해 줌으로써, 보장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가중

*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른 바 ‘민식이법’(20.3월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보험의 신규가입 급증 추세[70만건(19.2분기)→ 183만건(20.2분기)]

II.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자동차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22.1.1. 시행)을 통해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 신설**('22.7.28.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

* 운전자 사고부담금 범위에 기존의 '음주·무면허·뺑소니' 외에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새롭게 추가하여 표준약관(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5)에 명시

- 지금까지는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 부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금전적 책임을 부담

○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의 경우 아직까지 '음주·무면허·뺑소니'에 대해서만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인정하고,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액을 보상**(개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약관에서 규정,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약관 비교>

<운전자보험 약관(발체, ○○화재)>

□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사고

-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 I	대인 II	의무보험	의무초과
음 주	1천만원	1억원	5백만원	5천만원
무면허 뺑소니	3백만원		1백만원	

2. ~ 3. (생 략)

※ 마약·약물운전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 규정 미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발체)>

제 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전단 생략)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서 생략)

1.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 II」 : 1 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 5천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서 생략)

※ 마약·약물운전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 문제점

- 마약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부담 증가 우려
 - ※ (사례) '20.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 중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는 피해자 9명에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 부담은 '제로'
-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에서 운전자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보장해야 할 합리적 이유 미흡
 - ※ 운전자보험이 '임의보험'임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체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소지
- 높은 비난 가능성으로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에 문제
 - 국민들은 음주, 뺑소니보다 '마약'을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인식
-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

Ⅲ. 개선방안

- 운전자보험의 경우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상품 약관에 반영

- ※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서 등을 통해 지도·감독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자보험의 경우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상품 약관에 반영※ 공문서 등을 통해 감독기관 지도·감독	2022.10. [금융감독원]

정 본 입 니 다 .

2022. 4. 12.

국 민 권 의 위 원 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